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15

2019년 9월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경만선 의원(찬성자 9명)
나. 발의일자 : 2019년 8월 5일
다.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라. 상정결과 :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년 9월 3일, 상정 ·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경만선 의원)

가. 제안이유

○ 한류의 확산을 비롯하여 국가 간의 국제문화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그 법적·제도적 지원은 미비함. 이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서울시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주요내용

(1) 시장이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2) 시장이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3) 시장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연수·연구 등에 대한 지원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5)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시장이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2)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3)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조례안 제정 추진경위

○ 동 조례안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과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명기하고, 서울특별시의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조성 및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9년 8월 5일 우리 위원회 경만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이 발의하였음.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은 한류 문화의 확산과 관련해 국가 간 국제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마련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운영, 국제문화교류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국제기구 유치, 시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 등을 골자로 서울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서울시 문화본부가 참여하고 있는 WCCF(세계도시문화포럼) 및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사업 등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전략적인 추진방향과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등이 국제문화교류와 관련된 조문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실행을 담보하지는 못하고 있으므로 개별 조례 입법을 통해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5조(시장의 책무) ③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한다.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단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에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지원단에 단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생활문화 축제 개최와 국제교류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의 위임사항을 포함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음[1].

□ 조례안 조문별 검토(총10개 조문)

○ 동 조례안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총칙 규정에 해당하는 조문 3개,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의 수립 시행,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 국제문화교류 사업 등 세부적인 본칙 규정 6개 등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음.

1) 현재까지 제주, 광주,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제정일순) 이상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제문화교류 진흥 관련 조례를 시행 중임.

○ 안 제1조(목적)은 동 조례안이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의 국제문화교류 기반조성과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음.

○ 안 제2조(정의)는 “국제문화교류”의 정의를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정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 법이 구체적인 국제문화교류의 정의를 명시하지 않고 관련법의 법률명을 열거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관련법 및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개정 소요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바람직한 규정 방식으로 판단됨.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문화교류”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관련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문화(예술, 관광, 체육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문화를 말한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국제적 협력 및 활동을 말한다.

1. 「문화기본법」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3. 「영상진흥기본법」
4. 「국어기본법」
5. 「문화예술진흥법」
6. 「콘텐츠산업 진흥법」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9.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10.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1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2. 「문학진흥법」
1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관광진흥법」
1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17. 「도서관법」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19.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20. 「스포츠산업 진흥법」
21. 「국민체육진흥법」
22.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안 제3조(시장의 책무)와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는 서울특별시장에게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5월 〈제1차 국제문화교류진흥 종합계획(2018~2022)〉를 발표하고, '세계와 공감하고 협력해 모두가 행복한 국제문화교류'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정책 방향과 목표를 다음와 같이 설정하였음.

〈제1차 국제문화교류진흥 종합계획(2018~2022)〉 문화체육관광부

비전	**세계와 공감하고 협력하여 모두가 행복한 국제문화교류**			
정책 목표	체계적인 문화교류 지원	국제문화교류의 자율성 강화	지속가능한 문화교류 생태계 조성	
4대 전략	국제문화교류 진흥 체계화	국제문화교류 대상의 다양화	지역과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
세부 추진 과제	1. 국제문화교류 정책 추진체계 구축 2.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운영 3. 재외문화원 인프라 확충 및 다기능화 4.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세종학당 활성화	1. 북방지역 문화교류 활성화 2. 신남방협력 증진을 위한 문화교류 활성화 3. 한중일 문화교류 심화 4. 유네스코와의 협력 강화 5. 한국문화를 매개로 한 국가이미지 제고	1. 지역문화예술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사업 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활동 지원 3.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사업 활성화 지원 4.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 강화	1.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 2.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3.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 실시 4. 미래기술 활용 문화교류 사업 지원

서울시는 향후 동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계획 수립 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세부추진과제와 연동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안 제5조(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 등)는 서울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례안의 해당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2018.9.)에서 분류하는 ‘자문기관’으로 의결 내용이 법적 기속력을 갖지 않는 위원회임.

동 조례안을 통해 구성되는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① 시 또는 자치구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과 ② 시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의 제8조(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운영)를 따른 것임.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8조(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시·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2. 시·도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안 제6조(사업)은 시장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종시를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해당 조례의 조문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임.

○ 안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은 안 제6조제3호에 규정된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세분화된 사업으로 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교재의 개발 지원, 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연수·연구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을 조례에 하나로 묶어 규정한 것임.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연수·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교재의 개발 지원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연수·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 안 제8조(경비 지원)는 상기 법령 제13조(경비 지원)와 법 시행령 제9조(경비 지원)의 규정을 차용한 것임.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3조(경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9조(경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 안 제9조(포상)의 경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차용한 것임.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10조(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통하여 국가 간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한 자
2. 국제문화교류 관련 연구 또는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자

○ 결론으로 서울시의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동 조례안의 제정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동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에서는 세계 여러 도시와의 친선과 우호 협력이 문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첨부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추진 현황('18.~'19. 현재)

연번	시기	교류국가	행사지역	행사명	유형	예산(천원)	주관부서
1	'18.3.	프랑스등 6개국	서울	'18 프랑코포니영화제	영화제	5,000	서울역사박물관
2	'18.3~6.	핀란드	헬싱키	입주작가 교환프로그램	레지던시	7,200	서울시립미술관
3	'18.4~6.	스페인	빌바오	입주작가 교환프로그램	레지던시	7,200	서울시립미술관
4	'18.4.	일본	지바현	K-CON 한류콘서트 연계 도시홍보 프로모션	프로모션	140,000	도시브랜드담당관
5	'18.4.	중국	서울	'18 한중관광사진전	전시	49,000	관광사업과
6	'18.4~7.	스웨덴	서울	국제교류전 '아이캔두잇!'	전시	164,000	서울역사박물관
7	'18. 6.	중국,일본	서울	'18 서울사진축제	워크숍	2,924	서울시립미술관
8	'18.7.	싱가포르	싱가포르	세계도시포럼 연계 도시홍보 프로모션	프로모션	163,000	도시브랜드담당관
9	'18.7~9.	뉴질랜드	더니든	입주작가 교환프로그램	레지던시	7,200	서울시립미술관
10	'18. 8.	아르헨티나	서울	해외유명작가초청강연 (레안드로에를리치아티스트토크진행)	교육	5,349	서울시립미술관
11	'18.9.	50개국	서울	제7차UNWTO세계도시관광총회	국제회의	800,000	관광정책과
12	'18.9.	영국,캐나다,노르웨이,뉴질랜드	서울	유니버설디자인국제세미나	세미나	80,000	디자인정책과
13	'18.9.	영국, 미국, 덴마크	서울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국제포럼	포럼	100,000	디자인정책과
14	'18.9.	미국, 영국	서울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컨퍼런스	컨퍼런스	150,000	디자인정책과
15	'18.9.	전세계 70개국	서울	'18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문화제	495,000	국제교류담당관
16	'18.9~12.	중국	서울	'18 국제교류전 〈한중교류의 관문, 산동: 동아시아 실크로드 이야기〉전시회	전시	351,236	한성백제박물관
17	'18.10~11.	체코 등 유럽 8개국	서울	'18 유니크영화제	영화제	8,500	서울역사박물관
18	'18.11.	중국, 일본	서울	'18 백제역사유적 국제학술회의	학술	104,241	역사문화재과
19	'18. 11.	멕시코,캐나다,일본	서울	'18 서울사진축제 전시회	전시	9,512	서울시립미술관
20	'18.12.	이탈리아	서울	'18 하반기 프로젝트 갤러리 기획전	전시	2,513	서울시립미술관
21	'18.12.	홍콩	홍콩	MAMA 연계 도시홍보 프로모션	프로모션	70,000	도시브랜드담당관
22	'19.2~3.	중국	서울	'19 한중관광사진전	전시	16,000	관광산업과
23	'19.2~4.	스페인	빌바오	입주작가 교환프로그램	레지던시	7,200	서울시립미술관
24	'19.2~4.	핀란드	헬싱키	입주작가 교환프로그램	레지던시	7,200	서울시립미술관
25	'19.3.	스위스등 6개국	서울	'19 프랑코포니영화제	영화제	5,000	서울역사박물관
26	'19.4~7.	덴마크	서울	국제교류전 '안데르센, 코펜하겐 1819'	전시	245,000	서울역사박물관
27	'19.5~7.	일본	도쿄	입주작가 교환프로그램	레지던시	6,700	서울시립미술관
28	'19.7.	몽골	울란바타르	서울-울란바타르 자매도시교류 도시홍보 프로모션	프로모션	300,000	도시브랜드담당관
29	'19.9.	섭외중	서울	유니버설디자인국제세미나	세미나	80,000	디자인정책과
30	'19.9.	섭외중	서울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국제포럼	포럼	100,000	디자인정책과
31	'19.9.	전세계 70개국	서울	'19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문화제	495,000	국제교류담당관
32	'19.10.	섭외중	서울	서울은 미술관 공공미술 컨퍼런스	컨퍼런스	150,000	디자인정책과
33	'19.11.	아시아 주요 도시	서울	'19 아시아도시문화포럼	포럼	125,000	문화정책과
34	'19.12.	중국, 일본	서울	'19 백제역사유적 국제학술회의	학술	100,000	역사문화재과
35	'19.12.	베트남	서울	국제교류전 "백제와 부남국(가안)"	전시	327,000	한성백제박물관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경만선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15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5일

발 의 자 : 경만선 의원 (1명)

찬 성 자 : 김제리, 문병훈, 노승재, 최영주, 김춘례, 김인호, 김호진, 김화숙, 오한아 의원 (9명)

1. 제안이유

○ 한류의 확산을 비롯하여 국가 간의 국제문화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그 법적·제도적 지원은 미비함. 이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서울시가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여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주요골자

가. 시장이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시장이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시장이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연수·연구 등에 대한 지원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시장이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1호) 참조

다.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조성과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제문화교류”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계획(이하 “진흥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제문화교류 정책과 관련된 협력, 역할 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또는 자치구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2. 시의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국제문화교류 관계자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사업)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2. 자치구와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3.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4.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사업

5.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연수、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교재의 개발 지원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연수、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8조(경비 지원)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활동 또는 시설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 및 학회 등의 연구、학술 사업 및 활동
2.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3. 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활동

제9조(포상) 시장은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법

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은 제5조(국제문화교류협의회 설치 등), 제6조(사업),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8조(경비 지원), 제9조(포상) 규정에 의해 비용 발생

- 안 제6조 제3호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은 안 제7조와 같은 내용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 안 제8조(경비지원)은 서울시 문화본부의 '주한문화원 협력사업' (19년 예산 50백만원)으로 기 추진 중에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
- 안 제9조(포상)은 서울시 문화본부의 '서울특별시 문화상 시상' 사업(19년 예산 70백만원)으로 기 추진 중에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임(제3조제1항제1호)

1) 추계결과

○ 총 비용≒ 1,816,000천원(연평균 363,2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내용 및 조항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세입	소계(a)	-	-	-	-	-	-
세출	국제문화교류협의회	13,200	13,200	13,200	13,200	13,200	66,000
	전문인력 양성	350,000	350,000	350,000	350,000	350,000	1,750,000
	소계(b)	363,200	363,200	363,200	363,200	363,200	1,816,000
총 비용(b-a)		363,200	363,200	363,200	363,200	363,200	1,816,000

2) 비용추계 전제

○ 국제문화교류협의회는 20명(시의원 1명, 담당 공무원 1명, 민간위원 18명)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연 4회(분기별 1회) 개최

○ 전문인력의 양성은 서울시 관광체육국 “MICE 전문인력 양성” 사업비를 준용하여 추계

○ 물가상승률 미반영

3) 비용추계 산식

○ 비용추계 합계액 ≒ 총 1,816,000천원 (연 평균 363,200천원)

-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운영 : 총 66,000천원 (연간 13,200천원)

· 연간 위원회 참석수당 : 150천원 × 18명 × 4회 = 10,800천원

· 연간 업무추진경비 : 30천원 × 20명 × 4회 = 2,4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은 시의원 1명, 공무원 1명을 제외한 13명, 업무추진경비는 15명을 기준으로 추계

※ 회의참석 수당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기본료 10만원을 준용하고, 위원회가 2시간을 초과하여 진행된다고 가정하여 초과 비용 5만원을 포함

※ 업무추진비 단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별표 1〕(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따라 3만원 으로 가정

-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 총 1,750,000천원 (연간 350,000천원)

※ 서울시 관광체육국 “2019 MICE 전문인력 양성” 사업비를 준용

나. 기술적 추계 곤란(제3조제1항제2호)

○ 같은 조례안 제6조(사업) 제1호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제2호 ‘자치구와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사업’, 제4호 ‘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사업’의 경우, 세부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곤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분석관(주무관)	박인근
	☏ 02-2180-7934
	e-mail : yab0217@seoul.go.kr